

심사보고서

2016년 3월 일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 3. 21.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172호)

나. 회부일자 : 2016. 3. 21.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16. 3. 24.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가. 제안이유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전시·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무역 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 위치 : 성북구 동선동1가 85-102
- 규모 : 대지 108.3㎡, 연면적 67.37㎡(지상2층)
- 시설내용

| 층 별 | 면적(㎡) | 주요 시설 | 비고 |
|-----|-------|---------------------------|----|
| 1층 | 37.77 | 워크숍, 모임방, 교육장, 간이주방 | |
| 2층 | 29.60 | 공정무역 제품 전시 및 판매장, 피팅룸, 창고 | |

※ 대상시설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 예정임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운영 및 시설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본 동의안은 2016년 5월 개소 예정인 “공정무역 전시·홍보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관련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5조 제2항에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호의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공정무역 운영 및 관련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바, 공정무역 홍보·전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판단됨.

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방법은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 “성북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추진 하려는 것임.

라.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정무역 홍보·전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 사무로 운영함은 별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